

●고용노동부령 제22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제111조제1항 중 “50킬로미터”를 “25킬로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하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면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요건을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거주지로부터 50킬로미터 이상에서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여성가족부령 제127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라)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 따른”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